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제48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과태료처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김 천 시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 7. ~ 2019. 1. 22.(15일간)
3. 공고대상 : 불임 참조
4. 안내사항

가. 의무보험 가입명령 대상자는 본 공고문 열람 후 즉시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6조 4항에 의거 차량번호판이 영치되고, 운행할 경우 동법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계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75%(가산금 3%, 증가산금 매월 1.2%)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계 [☎ 054)439-2600, FAX 054)420-6254]